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627
----------	------

제안년월일 : 2020년 6월 17일

제안자 : 교 통 위 원 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전병주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91호), 정지권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18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69호)을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2020.6.17.)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전병주 의원 외 13명, 정지권 의원 외 9명,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신설하고, 주차장 관리자에게 고임목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주차장 사전등록결제시스템 등의 활성화

도모 및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인 바,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신설함(안 제3조의2)
- 나.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차량번호 인식 결제시스템, 주차요금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1호)
- 다.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단서)
- 라. 바로녹색결제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요금을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1항제12호 및 부칙 제2조)
- 마.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
- 바. 주차장 관리자에게 고임목 및 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 사.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리자의 재량이 과도하게 부여될 수 있는 감면 대상을 삭제함(안 제23조의2)
- 아. 여성우선주차장의 설치비율을 기계식 주차대수를 제외한 자주식 주차대수 기준으로 규정함(안 제25조의2제1항)
- 자. 그 밖에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정비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대하여”를 “대해”로,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를 “않은 공간은 수급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차장법」 제2조제5호”를 “법 제2조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태조사”를 각각 “수급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구분조사”를 “구분 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태조사”를 각각 “수급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비교하여”를 “비교해”로, “공부”를 “공적 장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수급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충족여부
2.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3.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제3조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주차수급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지역에 대하여는”을 “지역을”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주차시간측정계기(차량번호 인식을 통한 결제시스템 및 주차요금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제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목적지 전철역장 이용확인 혹은 버스현금영수증 등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을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 또는 출차시 정산기를 통해 확인되면”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바로녹색결제시스템(사전에 주차요금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을 자동 지불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2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소관 주차장의 경사 주차면에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 관리자는 소관 주차장에서의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를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을 각각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제23조의2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업무수행 관용차량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구의원 차량

3. 행사·회의참석 등 공무로 방문하는 외빈차량 및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

하는 언론기관 로고 부착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보도차량

제25조제1항 본문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규모”를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1 비고 제7호 중 “교부 받는 주차쿠폰의 요금”을 “주차요금”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 중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중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를 “부지”로 한다.

별도 제3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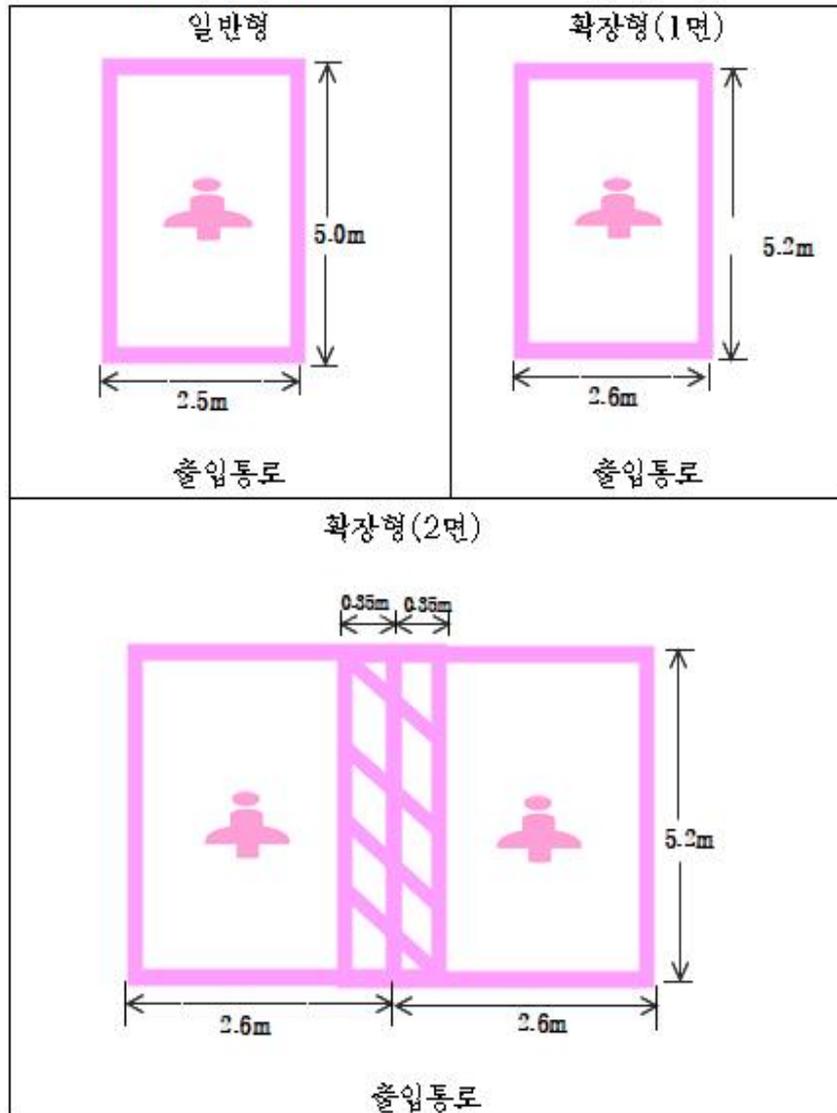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바로녹색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7조제1항제 1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도 제3호 서식]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2제3항 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가로 75cm × 세로 155cm
2. 색채
 -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다.

나. 「주차장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
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
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
하되 세부일정은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 다. (생략)

4. 실태조사 방법

가. (생략)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
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
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
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
분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ㄱ.

나. 법 제2조제5호-----

2. 수급실태조사 -----

-----.

3. 수급실태조사 -----

가. ~ 다. (현행과 같음)

4. 수급실태조사 -----

가. (현행과 같음)

나. -----

---- 구분 조사

② ----- 수급실태조사---
-----.
----- 수급실태조사 -----
----- 비교해 -----
----- 공
적 장부 -----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

③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수급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 수급실태조사 -----

-----.

제3조의2(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 기준 충족여부
2.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3.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제3조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70%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략)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 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원)

① -----
----- 수
급실태조사-----
----- 지역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주차시간측정 계기(차량번호 인식을 통한 결제시스템 및 주차요금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이

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2. ~ 9. (생략)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생략)

2.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일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

하 같다)-----

2. ~ 9. (현행과 같음)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생략)

4. 1급지를 제외한 요금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버스·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목적지 전철역장이용확인 혹은 버스현금영수증 등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5. ~ 11.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제8조(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① 시장은

-----.

3. (현행과 같음)

4. -----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 또는 출차시 정산기를 통해 확인되면 -----

-----.

5. ~ 11. (현행과 같음)

12. 바로녹색결제시스템(사전에 주차요금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을 자동 지불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해당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해당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하는 경우 : 해제비용 미징수
2.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하는 경우 : 해제비용 3만원 징수

제9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제9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1. ~ 3. (생략)

4.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의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도시교통권역에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③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1.·2. (생략)

④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

1. ~ 3. (현행과 같음)

4.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도시철도법」제2조제1호-----

③ ----- 교
통영향평가를 실시-----

1.·2. (현행과 같음)

④ -----

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 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23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관용차량

3. 외국사절 등 외빈차량 및 언론기관의 보도차량

4.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차량 중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하는 차량

-----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제23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업무수행 관용차량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구의원 차량

3. 행사·회의참석 등 공무로 방문하는 외빈차량 및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로고 부착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보도차량

<삭제>

[별표 1]

현행	개정안
<p><비고></p> <p>7. 거주자우선주차제(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배정하는 제도)의 시행지역을 방문하는 자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자동차를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 <u>교부 받는 주차쿠폰의 요금</u>은 시장이 해당 및 주변 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p>	<p><비고></p> <p>7. ----- ----- ----- ----- ----- ----- <u>주차요</u> <u>금</u> ----- ----- -----.</p>

[별도 제3호 서식]

현행	개정안
<p><별도 제3호 서식> (개정 2012.11.1)</p> <p>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2제3항 관련)</p> <p>출입통로</p> <p>출입통로</p> <p>출입통로</p> <p>- 비 고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5m이상×세로 5.1m이상)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피코그램) 표시 : 가로 75cm × 세로 155cm 색채 :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설치위치 :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p><별도 제3호 서식></p> <p>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2제3항 관련)</p> <p>출입통로</p> <p>출입통로</p> <p>출입통로</p> <p>- 비 고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6m이상×세로 5.1m이상)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피코그램) 표시 : 가로 75cm × 세로 155cm 색채 :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설치위치 :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